

# 서 면 답 변 서

## ○ 이종필 의원

(질의요지)

- 하수도 GIS DB를 공개하십시오. 만약에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수암거의 위치만이라도 공개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.

(답 변)

- 질문 제1항의 하수도 GIS DB 공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
-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8조(보안관리),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0조(공간정보의 분류) 및 서울특별시보안업무처리규칙 제93조에 의거 공개제한으로 분류되어 있어, 하수도 GIS DB의 전면 공개는 곤란하지만 일반 시민에게도 필요지역에 대해서는 출력물로서 공개 가능합니다.
- 또한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의해 학술용역이나 각종 설계 및 공사시 하수관망 정보가 필요한 경우 설계자 및 시공사에게 도형 및 속성(관경, 관저고, 심도, 연장 등)을 포함한 파일형태로 공개하고 있으며, 공개후 GIS DB 사후관리는 보안업무처리지침에 의해 PC, 보조기억장치(USB,CD)등에 저장된 자료의 파기여부를 확인하는 등 절차를 거치고 있고, 이러한 보안관리업무처리에 대해 국가정보원, 감사원, 행정안전부 등에서 보안규정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사하는 등 엄격히 관리되고 있습니다.
- 일반 시민들에게는 정보공개청구되면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에서 정한 A3 1장 300원의 수수료 납부를 확인하고 해당 지역의 하수관망도를 출력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.

(질의요지)

- 하수도 GIS DB 공개제한은 사유지에 설치된 하수암거를 은닉하기 위한 편법이고 악용의 사례일 수밖에 없습니다. 이는 재산권을 보호하고 보장해야 하는 공직자의 의무와 헌법상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아닙니까?  
사유지에 설치된 하수도를 해당 사유지 소유권자에게 모두 통보하고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?

(답 변)

- 질문 제2항의 하수도 GIS DB 공개제한은 사유지에 설치된 하수암거를 은닉하기 위한 편법이고 악용의 사례와 사유지에 설치된 하수도를 해당 사유지 소유권자에게 모두 통보하고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
- 앞서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술용역, 각종 설계 및 공사시 또는 건축 등의 목적으로 개인이 정보공개청구시 해당 지역에 대해 사용 목적 등에 합당할 경우 자료를 공개하고 있으므로, 사유지에 설치된 하수암거를 은닉하기 위해 편법으로 정보를 공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
- 향후 사유지를 통과하는 하수도 현황을 해당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안을 하수관거의 『공공하수도 관리청인 자치구』와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

(질의요지)

□ 사유지를 침범한 하수도 설치에 따른 재산권 보상의 방안을 밝히십시오.

(답 변)

□ 질문 제3항의 사유지를 침범한 하수도 설치에 따른 재산권 보상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

○ 하수도가 사유지에 저축될 때 이설을 우선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. 지형 여건상 이설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장 여건에 맞는 대책을 검토하여 문제를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.

- 사유지 도로상에 하수도가 부설된 경우에는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자치구로 하여금 이설, 매입 등의 경제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으며,

- 노후된 건축물이 밀집해 있는 개발사업 예정 부지인 경우에는 추후 개발사업을 통해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.

- 또한 토지주와 협의를 통해 토지사용승낙을 받거나 상세 원인규명을 통해 해결책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

○ 하수도는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기반시설로 『공공 하수도 관리청인 자치구』와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.

(질의요지)

□ 본 의원의 요구사항을 거절하는 것은 부작위에 의한 불법적 행위라고 단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.

(답 변)

□ 질문 제4항의 본 의원의 요구사항을 거절하는 것은 부작위에 의한 불법적 행위라는 견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

○ GIS 자료 공개는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적합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불법적 행위는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.